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적 검토	2
2. 법률별 검토	6
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6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
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14
※ 참고자료	18
1. 국립생태원 개요	18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요	19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요	20
4.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요	21

I. 제안경위

2025년 4월 22일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202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개별법상 일정한 직위의 해임·해촉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표] 해임·해촉 사유 관련 개정 대상

○ 환경부 소관 (3개 법률)

법률명	관련 조문	직위	관련사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국립생태원장 및 상임이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생물자원관장 및 상임이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국립생태원장 및 상임이사, 생물자원관장 및 상임이사,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직위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하면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해촉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을 특정 직위에서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 또는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별법상 해임·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특정한 직위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심신”이라는 표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심신장애는 ① 심신(心神)장애로 정신적 장애만을 의미하거나 ② 심신(心身)장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심신”에 대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고¹⁾, 개정 대상이 되는 3개 법률의 관련 조문에서는 해당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지

1) ‘심신’이라는 용어 관련 입법례

구 분	법조문
심신(心神)	형법 제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 등
심신(心身)	헌법 제106조, 검찰청법 제39조의2, 예금자보호법 제10조 등

않는 바, 각 법률에서 “심신”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각 법률 및 직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의미함.

현행법이 “심신장애”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의 장 등이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개정안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는 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에 비해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사고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인 의사가 하도록 하여 그 판단을 객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

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그 판단 방식(판단주체, 방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각 법률의 개정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함.

- 2) 이와 관련하여 유사입법례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검사 등의 해임 사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두 법률 모두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나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특별검사 등의 해임 사유 입법례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률별 검토

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정안은 국립생태원의 원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생략)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국립생태원은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 산하기관이며, 현행법³⁾에 따라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면서 원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임.⁴⁾

개정안은 원장의 해임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권고 사유 중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면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

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국립생태원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생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생태원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장 및 상임이사는 국립생태원의 총괄적인 운영·관리 및 기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 반드시 신체적 활동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사유에 신체적 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해임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에 비해 해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임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자발적 행위를 해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5)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법령상 용어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문 상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질환’으로 개정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해임 사유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⁶⁾, 「형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⁷⁾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이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질환’은 몸의 온갖 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토피나 고혈압 등 일상질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7)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정안은 생물자원관의 관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임(안 제1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생물자원관⁸⁾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있음.

현행법⁹⁾은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관장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임이사는 관장을 보좌하여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면서 관장이 사고 시 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임.¹⁰⁾

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항 및 제6항 생략)

10)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4항 생략)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안은 관장의 해임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 권고 사유 중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면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생물자원관의 관장 및 상임이사는 총괄적인 운영·관리 등 기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 반드시 신체적 활동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사유에 신체적 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해임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에 비해 해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임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받

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자발적 행위를 해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법령상 용어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문 상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질환’으로 개정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해임 사유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¹²⁾, 「형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¹³⁾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이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12) ‘질환’은 몸의 온갖 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토피나 고혈압 등 일상질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임(안 제3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 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 囑)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가 등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임.¹⁴⁾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임면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 반드시 신체적 활동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체적 질환을 위원의 해

-
- 1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임·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해임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에 비해 해임·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임·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자발적 행위를 해임·해촉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법령상 용어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문 상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질환’으로 개정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해임 사유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¹⁶⁾, 「형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¹⁷⁾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이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16) ‘질환’은 몸의 온갖 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토피나 고혈압 등 일상질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7)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 한다.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국립생태원 개요

□ 법적근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 목적

- 생태분야 연구, 전시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보전 의식 함양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자연 생태환경 제공
- 생태관광 육성 및 지역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 기능

- (생태연구) 생태조사연구평가 법정위탁사업 수행, 자연환경 분야 정책지원 등
- (생태전시) 동식물 생태전시 및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 (생태교육) 생태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및 생태지식 콘텐츠 개발·보급
- (멸종위기종 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증식 및 복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운영
- (대외협력) 생태관광 자원발굴 및 지역협력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 임원현황 : 상임이사(6인), 비상임이사(6인), 비상임감사(1인)

구분	상임 (6명)	비상임 (7명)
전체 (13명)	- (원장) 이창석 - (경영·안전본부장) 여정화 - (생태기후연구본부장) 권영한 - (조사평가연구본부장) 박은진 - (전시교육본부장) 최선두 -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최승운	- (비상임이사) 김태오(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당연직), 강신두(서천군 추천, 당연직), 안소은, 조병옥, 오혜정, 서창완(노동이사) - (비상임감사) 이근엽

※ (임기) 원장 3년, 1년단위 연임 가능 / 이사와 감사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요

□ 법적근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 목적

-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주요 기능

- (담수생물 국가자산화) 국가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신종·미기록종 발굴, 생물표본 확보 및 생물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한 디지털 전환
- (담수생물 다양성 보전 연구)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 해법 연구
- (담수생물 이용기술 개발) 담수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용 확대를 위한 유용생물자원의 실용화 연구 및 산업화 지원
- (전시·교육) 생물자원 전시관 운영을 통한 생물다양성 인식 확대 및 전시관람·체험·교육 등 지역 문화향유공간 제공

□ 임원현황 : 상임이사(3인), 비상임이사(5인), 비상임감사(1인)

구분	상임 (3명)	비상임 (6명)
전체 (9명)	- (관장) 용석원 - (경영관리본부장) 조광석 - (연구관리본부장) 신동석	- (비상임이사) 김태오(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당연직), 오상철(상주시 부시장, 당연직), 김원태, 이영두, 피정옥 - (비상임감사) 박효민

※ (임기) 관장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 본부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요

□ 법적근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 목적

- 도서(島嶼)·연안(沿岸)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생물주권 조기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주요 기능

- (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전략적 조사·발굴·확보를 통하여 국가 생물주권 확립에 기여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 마련
- (도서·연안 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소재의 활용 가치 증진
- (도서·연안 생물자원 바이오산업 육성) 도서·연안 생물자원 유래 소재의 활용 가치를 증진하고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생물자원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도서·연안 생물자원 전시·교육) 도서·연안 생물자원 연구성과를 활용한 전시·교육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의 균형적 실천

□ 임원현황 : 상임이사(3인), 비상임이사(5인), 비상임감사(1인)

구분	상임 (3명)	비상임 (6명)
전체 (9명)	- (관장) 박진영 - (경영관리본부장) 정성조 - (도서생물연구본부장) 오병건	- (비상임이사) 김태오(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당연직), 조석훈(목포시 부시장, 당연직), 서인원, 임영운, 정병철 - (비상임감사) 임영재

※ (임기) 원장 3년, 1년단위 연임 가능 / 이사와 감사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4.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회의),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수자원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짐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환경부차관), 부위원장(수자원정책관)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함
 - 수자원, 환경, 법경제, 도시분야 외부 전문가 중 성별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함
- 당연직 위원은 직무를 기준으로 임명하며, 전보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별도 위촉 절차없이 직무 후임자가 위원직을 맡음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않고 해당 직무의 종료시까지로 함
-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 기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후임자는 전임자와 동일 성별, 지역 연고자를 우선으로 위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별과 지역연고의 변경이 가능함